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김광수(노원) 의원 (찬성자 11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240 호

다. 발의일자 : 2017. 11. 8.

라. 회부일자 : 2017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의 제5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조제3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3항 중 상위법 인용조문인 ‘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다목’이 ‘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¹⁾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- 2015.4.20.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면서 하위의 시행규칙에 있던 ‘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’이 시행령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]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점용허가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점용허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. 다만,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.	③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3항제1호다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1) 제5조의3(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)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.

1. 일반재산
가. ~ 나. (생략)
다. 주택·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을 포함한다)
라. ~ 아. (생략)
2. ~ 4. (생략)
② ~ ③ (생략)